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3. 30. ~ 2026. 4.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하되”를 “정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된”을 “부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부의안건”을 “제출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를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하다고”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발의 제출은”을 “제출ㆍ발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의하는”을 “발의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의 의원이”를 “발의의원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부하되”를 “회부하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얻어”를 “거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을 “(신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회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회의 규칙에”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의 할”을 “부칠”로 한다.

제15조 중 “본회의”를 “본회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심사 보고한”을 “심사보고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을 “자신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으로,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에 있어서의”를 “본회의에서”로, “제출하되”를 “제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 있어서의”를 “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번안 할”을 “번안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를 “질의·토론을 거

쳐 표결하되,”로 한다.

제21조 중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을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을 “의원은 발언하려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로,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선포하여야한다”를 “선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표결에 있어서”를 “표결 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가부(可否)”를 “가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를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것 부터”를 “것부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발의, 제출, 회

부, 환부, 이송”을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부의안건”을 “제출안건”으로 한다.

7. 제반 보고사항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을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으로, “서명,”을 “서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기동안만 서명,”을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재, 복사하게”를 “전재ㆍ복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표되어서”를 “공표해서”로 한다.

제2장에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제4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를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로 한다.

제47조 중 “찬성자를 요”를 “찬성자가 필요”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조례안”을 “조례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를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결과 그 밖의”를 “결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6호 중 “안건 명”을 “안건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의할”을 “부칠”로, “안건 명”을 “안건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ㆍ날인한다”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회의록 그 밖에”를 “회의록, 그 밖의”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를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62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부의하도록”을 “부치도록”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의원에게”를 “징계대상의원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찬성의원을 요”를 “찬성의원이 필요”로 한다.

제65조제2항 단서 중 “집회일 부터”를 “집회일부터”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징계 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부의하여”를 “부쳐”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문”을 각각 “자문 응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
제3조(휴회) ① (생 략)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정할 ----------.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 정하되, ----------. ② ----- 부친 ----------.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미리	제6조(의사일정) ① ---------- 제출안건----------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 긴급하다고 ----------.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 -- 경우 ----------.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제출·발의는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발의할 ----------. ---- 발의의원이 ----------.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부친다. ----------.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② ---------- 회부하되, ----------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 거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안 예고) ①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 의회 누리집 ----------.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없으면 ----------. ---------- 긴급한 ----------.
③ 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③ ---------- 이 규칙에서 ----------

준용한다.	------.
제13조(심사기간) ① (생 략)	제13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부칠 --------.
제15조(재회부) 본회의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재회부) 본회의는 ----------.
제17조(수정동의) ① (생 략)	제17조(수정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② -------- 심사보고한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

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 자신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 받아야 한다.
제19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9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 제출하되, ----------. ----------.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 ----------. ---------- 번안할 -------.

제2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안의 정리) ----------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
제2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발언의 장소) ① ---------- 하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발언횟수의 제한) ---------- 두 차례에 한정하여 ------. ----------.
제29조(5분 자유발언) ①·② (생략)	제29조(5분 자유발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의원 1명이 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③ ---------- 하되, ---------- 초과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토론의 통지) ① (생 략)	제31조(토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② ---------- 하되, ----------.

제3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 (생 략)	제3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한다. ②·③ (생 략)	제34조(표결의 선포 등) ① ---------- 선포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 시 ----------.
제37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생 략)	제37조(표결방법) ① ---------- 가부----------.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투표절차) ① (생 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제38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3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여러 개----------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 부터 먼저 표결한다.	3. ---------- 여러 개---------- 것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반보고사항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제출안건-------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서명 또는 ---. ----------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누리집----------.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	② ---------- 없으면 ---

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전재·복사하게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공표해서----------.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신 설>	제4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① 의장 또는 위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4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생 략)	제4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찬성자가 필요----------.
제4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제4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 ----------

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9조(위원회의 제안) ① ---------- 조례안,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53조(공청회) ① ---------- 전문지식이 필요한 ---------- 한다)으----------. ② ----------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 받아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연석회의) ① (생 략)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	제54조(연석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의에 부친 ----------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결과,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 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인쇄물로 ----------. ---- 긴급한 경우----------.
제5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57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심사 안건 명	6. --- 안건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위원회에서 종료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 명과 그 내용	10. ---------- ---- 부칠 ---------- ---- 안건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③ ----------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회의록, 그 밖의 ---------- 없으면 ----------. ----------.
제59조(예산안 심의) ① (생 략)	제59조(예산안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 부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④ ----------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 ----------

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의 의결) ① ---------- 부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한정하여 ----------.
제63조(결산의 검사) ① (생 략)	제63조(결산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② ---------- 부치도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생 략)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의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징계대상의원에 ----------. ---------- 찬성의원이 필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생 략)	제6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집회일부터 ----------.
제67조(심문 및 변명) ① (생 략)	제67조(심문 및 변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	② ---------- 징계안------

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부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제6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1. ---------- 자문 응답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2. ---------- 자문 응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만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